

대전지방법원 2017. 8. 17 선고 2017가단1440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고A종중

피고B 주식회사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8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 세종특별자치시 C 임야 31,881㎡ 중 별지도면 표시 1,2,3,4,5,1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 1,157㎡ 중 같은 도면표시(H)부분에 설치된 H빔기준기 1식을 철거하고 위 토지 1,157㎡를 인도하고, D 답 280㎡ 지상 조립식 창고 48㎡를 철거하고 위 토지 280㎡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9,600,000원 및 2017. 4. 30.부터 제1항 기재 토지인도 완료시까지 매년 4,8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이은신

별지